

한국철학문화연구소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‘한국철학·인문문화연구소’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로 하며,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안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한국철학을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전통적 인문정신문화와 융복합하여 사회적·국제적으로 확산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한국철학연구성과 분석
2. 연구총서발간
3. 학술회의 개최
4. 한국철학고전 및 동양인문고전에 대한 강좌개설
5. 자료의 발굴 및 영인
6. 워크숍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연구소장
2. 고문
3. 운영위원회
4. 자문위원회

제5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유학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에게 추천하고, 총장의 제청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고문) ① 연구소 운영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학계 원로 중에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소장의 임기를 따른다.

제7조(사업단 및 연구센터) ①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업단장 및 연구센터장은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.

④ 사업단 및 연구센터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사업부) ① 연구소에 사업부를 둘 수 있으며, 사업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무부는 사업전반을 총괄한다.
2. 연구부는 연구사업을 총괄한다.
3. 편찬부는 서적의 발간 사업을 총괄한다.
- ② 개별 사업부에는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.
- ③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소장의 임기를 따른다.

- ④ 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업무를 통할한다.

제 3 장 연구원

제9조(연구원)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연구위원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 2. 상임연구원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: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: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: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라. 연구원: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 3. 객원연구원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 4. 연구원보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③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리서치 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.
- ⑥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설치 및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- 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,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
4. 연구조직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5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6. 연구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
7. 사업단 및 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심의

제12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자문위원회

제13조(구성 및 운영) ①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교내·외의 전문학자로 구성한다.

- ② 본 연구소 사업에 대해 자문한다.

제 6 장 재 정

제14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의 찬조금,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,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5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제16조(사업계획 및 보고)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사업결과 내용은 최소 3년간 연구소에서 보관한다.

제17조(감사)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8 장 해 산

제18조(해산)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「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.

제 9 장 보 칙

제19조(세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